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5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용역

- 결과 보고서 -
(요약본)

2025. 08.

인사이트(주)

목 차

제1장 프로젝트 개요	3
제1절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인권영향평가 수행 범위	3
제3절 인권영향평가 수행 구조	4
제4절 인권영향평가 추진 Timeline	5
제2장 인권영향평가	6
제1절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세부 수행 프로세스	6
제2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
제3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1
제4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12
제5절 주요 인권이슈 도출	14
제3장 결론 및 제언	16
제1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언	16
제2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언	18

제1절 인권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라 정기적인 인권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행이 필요하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함

제2절 인권영향평가 수행 범위

- ▶ 프로젝트 기간 : 2025년 5월 7일 ~ 2025년 8월 9일
- ▶ 프로젝트 내용 :
 - 대내·외 인권경영 실태조사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 근거자료 수집 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종합 분석
 - 개선과제 도출
 - 주요 인권이슈 도출

▶ 프로젝트 수행 원칙

- 프로젝트 내용은 원칙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제시함
- 프로젝트 결과는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함
- 프로젝트 추진 기관은 참여 인력을 인권경영 전문가로 구성함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함

제3절 인권영향평가 수행 구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3개월의 기간 동안 내·외부 인권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관 맞춤형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수행 Framework를 설정하여 과업을 추진함

〈 인권영향평가 수행 Framework 〉



제4절 인권영향평가 추진 Timeline

과업	주요내용
Kick-o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5월 12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방향성 설정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논의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5월 26일 ~ 6월 11일 대상 : 재단 임직원, 재단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재단 주요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교육사업(새일센터) →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교육사업(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6월 23일 대상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목적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인권영향평가 근거자료 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7월 14일 대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목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작성 방법 안내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내용 및 실시 방법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작성 방법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7월 21일 ~ 7월 29일 평가주체 : 인권경영 전문 평가위원 평가방식 : 지표별 재단 제출 근거자료에 기반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피드백 : 인권영향평가 결과 초안을 바탕으로 보완자료 수집 및 실무 담당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중대성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5년 7월 30일 ~ 8월 1일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분석 중대성 평가를 통한 개선과제 우선순위 선정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1절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세부 수행 프로세스

1. 인권영향평가 개요

가.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인권실천·점검의무의 핵심기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내용으로 기관의 경영활동과 사업활동의 주요 가치사슬 단계에 연관된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¹⁾하는 바와 같이 정기성을 가지고 매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규 개발 및 고도화

전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지표 고도화(지표 중복, 삭제된 지표 중 재진단이 필요한 지표 등)를 실시함

인권경영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시사점, 최신 인권 트렌드를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최적화된 지표를 개발함

1)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다.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규 개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자료 및 관련 문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가치사슬 분석(Value chain)을 실시함

가치사슬 분석 결과 외에도 주요사업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사업특화 지표를 개발함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관에 최적화된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함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를 수집을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거자료 수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표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함

지표별 제출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용역사의 인권경영 전문위원이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함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기관과 공유하여, 인권경영 담당자 및 지표별 담당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확정함

마. 인권경영 실행

지표별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의 경우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본 프로젝트 이후 기관은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실시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활동의 이행이 필요함

2. 인권영향평가 세부 수행 프로세스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함

〈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



나. 인권영향평가 평가(근거)자료 수집 교육

인권영향평가 대상/평가 주체 등의 평가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자 대상 평가 교육, 지표별 담당자 대상 근거자료 수집 및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함

다. 인권영향평가 평가(근거)자료 제출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관련 자료를 지표별 각 담당 부서에 요청함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 부서는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제출함

라. 인권영향평가 실시

취합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용역사 인권영향평가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경영 전문가가 참여함

마.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개선과제를 포함한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에 체크가 된 지표는 반드시 평가위원이 의견 사항을 기재하며, 향후 개선과제 도출 시 활용함

제2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고도화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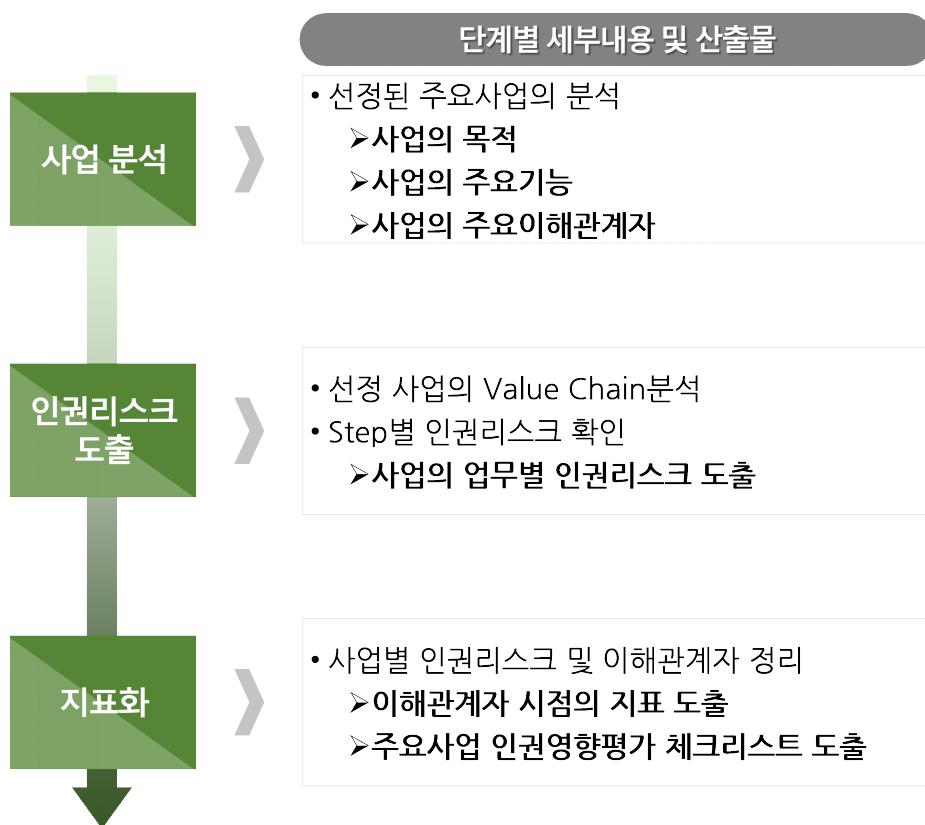
- 1) 지표 유지 : 지난 인권영향평가에서 ‘예’ 응답이 나왔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지표와 지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지표는 유지함
- 2) 신규 지표 : 국내외 제도 및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인권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점검이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
- 3) 지표 삭제 : 기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중, 기관과 무관한 지표이거나 既 확인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없는 지표는 삭제함
- 4) 지표 수정 : 기관 특성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의 항목을 재구성하거나 지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함

제3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주요사업과 관련한 규정, 규칙, 지침, 경영실적보고서, 사업 관련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 결과를 기반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구조 〉



제4절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번호	분야	평가결과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30	-	1	-	-	31
2	고용상의 비차별	14	-	-	-	-	1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5	-	-	-	-	5
4	강제 노동의 금지	5	-	-	-	-	5
5	아동노동의 금지	4	-	-	-	-	4
6	산업안전 보장	21	-	-	-	-	2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	-	-	-	8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	-	-	-	4
9	환경권 보호	8	-	2	-	-	10
10	고객 인권 보호	14	-	-	-	-	14
11	직원 인권 보호	27	1		-	-	28
합계		140	1	3	-	-	144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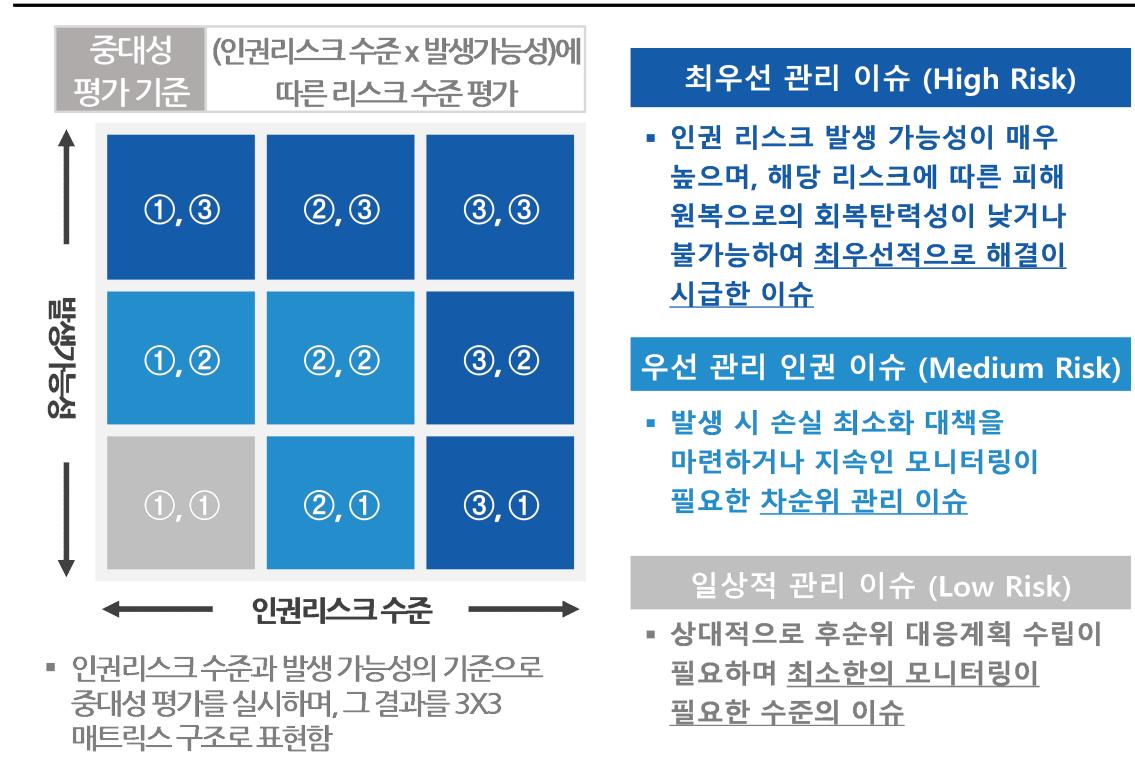
번호	분야	평가결과					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교육사업 - 새일센터							
1	직업교육훈련	14	-	2	-	-	16
2	찾아가는 취업특강	12	-	2	-	-	14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교육사업 -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1	체험관성교육	5	-	-	-	-	5
2	찾아가는성교육	3	1	-	-	-	4
3	움직이는체험관	5	1	-	-	-	6
합계		39	2	4	-	-	45

제5절 주요 인권이슈 도출

1. 중대성 평가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개선과제를 인권리스크 수준, 발생 가능성의 기준을 통해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여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를 선정함

〈 중대성 평가 방법론 〉



2. 중대성 평가 결과

순번	구분	지표 수
1	최우선 관리 이슈	4
2	우선 관리 이슈	3
2	우선 관리 이슈	3
합계		10

제1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재단의 경영활동과 연관된 인권영향을 파악하여 리스크를 식별하고 개선 및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재단은 매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왔으며 금번 과업에서는 최신 대내·외 인권경영 트렌드, 인권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재단 특성에 맞는 고도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지표 고도화 사항으로는 고용상의 비차별(고용상 남녀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결사·단체교섭의 자유),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지역 주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직원 인권 보호(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동기본권 준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분야의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재단 특성에 맞도록 문구 수정 등을 실시함

재단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대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아래와 같이 개선과제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재단은 개선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기관 인권정책선언(인권경영선언문)의 선언 주체를 변경하여 인권경영 선언이 재단의 공식 입장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재단 인권경영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임

환경권 보호 분야에서 재단은 환경권 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정보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환경사고 발생이나 이해관계자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직원 인권 보호 분야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이번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은 재단이 인권경영의 기본적인 체계와 실행 기반을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임

재단은 금년도 실시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들에 관하여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제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새일센터의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사업과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사업 2개 사업(5개 세부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문헌자료 분석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인권경영 추진 담당부서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확정함

*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특강, 체험관성교육, 찾아가는성교육, 움직이는체험관

평가 결과, 재단은 대체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에서 일부 영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과제로 제시함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및 찾아가는 취업특강 사업에서는 강사 섭외 과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강사를 선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해당 강사에게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절차 마련이 요구됨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움직이는체험관 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별 배점 등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추가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찾아가는성교육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교육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금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재단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존중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실무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된 운영 기준과 예방 절차 마련이 필요한 지점이 존재함을 시사함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이 많은 사업일수록, 강사 섭외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강사와 사업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존중 의무 서약과 교육현장 사전 안전 점검 등 예방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인권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단은 금년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단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단의 경영활동 및 사업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